

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

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4. 6. 2. ~ 2014. 6. 16.

3. 공고대상

대부료 체납 내역				납부 의무자		반송 사유
연도	과목	지번	체납액 (원)	성명	주소	
2010	시도유재산대부료	신평면 매산리 95-60	565,920	전찬수	당진시 송악읍 구래 1길 29-4 2동 30*	폐문부재

4. 공고내용

- 도유재산 대부료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정통지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,
- 위 공고기간 내 당진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실 경우 즉시 재산압류 해제가 가능하며,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매절차 등으로 강제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사항 : 당진시청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(☎041-350-3422)

2014. 6. 2.

당진시

